

건강가정기본법제정에 따른 2004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의 대응방안

한 해 빈 교수*

건강가정기본법이 지난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 2004년 2월 9일 제정 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확정되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현존하는 가족문제에 대한 취약한 제도 보완과 실천을 외면한 채, 건강가정 육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철학과 이념을 유기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족지원 복지 정책을 포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한국 가족복지는 정체하고 있는가 하는 논의점에 계속 머물고 있다.

I. 건강가정기본법제정에 따른 과제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명칭, 목적, 관점, 접근의 문제

- 건강과 불건강, 가정과 가족
-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사전적 가족정책 비전제시 결여
(입법을 통한 정책지원 실패)
- 가족지원기능 / 부양기능의 사회화 부족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

- 잔여주의적 관점
- 상담문화적 접근

<예> 제1장 제1조(목적)에 따른 제3조(정의) 4항“건강가정사업”에서 가족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

- 제1조(목적)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4항 ‘건강가정사업’이라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와 같이 건강가정사업을 기능론적인 가정기능강화사업으로 한정하여 가족정책면을 간과함.
- 제 21조 5항의 규정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행 관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건강가정 기본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실제적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제 21조 2항 2호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은 5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법률에 위임)¹⁾

2. 건강가족 개념에 대한 논란 –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의 부정
3. 성주류화 관점의 결여 – 불평등한 전통가정(여성문제의 유지, 옹호, 확대)
4. 가부장적 국가 계도(건강가정교육 및 가족가치실현, 건전한 가정의례 등)
⇒ 민주·참여정부의 방향과는 역행
5.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중복 및 업무혼돈

1) 윤홍식,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정의 주요쟁점”, 복지동향, 2004.4.

II. 건강가정기본법제정에 따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의 대응방안

1. 건가법 하위법령(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과정에 적극 개입 및 대처

1) 건가법 하위법령(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에 관한 5개 사회복지단체 단일안 의견서 복지부 제출

▷ 본 학회 임원단은 지난 2004년 2.12에 복지부를 방문하여 담당 국과장과 상견례를 갖고 2.19 결의대회(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보육업무이관에 관한 보고·결의대회)를 알리며 초청하였다.

▷ 그 때에 하위법령제정에 관한 일정 질의에 대하여, 복지부 담당부서인 인구가정정책과는 전혀 백지상태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방문 며칠 후인 2.16일자로 결의대회를 사흘 앞두고 2월 28일(휴무일으로 실제는 27일)까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공지하였다.

▷ 그래서 결의대회 바로 다음날인 2.20-21 동안 법제정 추진소위가 1박2일의 긴급 워크숍(양재동 교육문화회관)을 1차로 갖고 하위법령에 관한 의견서를 준비하였으며, 2차로 여의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실무자들과 다시 모여서 추가보완 작업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의견서를 완성하였다.

▷ 그리하여 2.27일 기한내에 5개단체(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의 단일안을 일단 이메일로 송고한 후에, 임원진이 함께 방문 제출하였다(참조: 5개단체 하위법령주요의견서).²⁾

2) 가. 센터의 조직과 운영(민간위탁, 기준 복지관과 전달체계의 활용,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우선)나, 건강가정사의 자격과 직무(센터장은 사회복지사 1급이고 건강가정사는 2급, 직무에 지역사회연계망구축과 자원개발 포함)

2) 보건복지부내 담당 사회정책실·국·과장 면담 및 관계부처 방문 및 청원

3) 3.26. 2004 대통령 권한대행 보건복지부 연례업무보고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장 민간전문가 대표참석 : 2004년도 시범사업(사회복지사무소 10· 지역사회복
지협의체 20· 건강가정지원센터3)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요청.

2.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공모참여

건강가정지원센터시범사업은 하위법령 의견수렴기간중인 2.26일 저녁에 공지되었으며 제출마감은 3월 20(토요일)이었다.

그 내용은 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여 가정단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 (1) 전국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 수도권, 충청과 호남, 영남으로 구분하여 세 곳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2) 시·군·구 직영 및 공공시설 설치 시에는 가산점을 주되, 학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 예산지원은 국비 50%, 해당 지자체에서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공모에 관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주도하에 긴급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교수진과 복지관 실무진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5개단체장에게 추천공문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시범 센터를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복지관들은 프로포osal을 3월 13일까지 관 협회에 우선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3월 16일(화)에 5개 단체 단체로부터 위촉받은 자문위원들이 전국에서 총 30기관이 응모할 프로포osal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을 하는 등 시범사업주체로 선정되도록 전문적 수퍼비전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의 예산확보까지 마친 4(갈산, 청솔, 부송, 김해) 곳의 복지관이 현재 응모한 상태이며 선정 심사가 4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 센터시범사업 심사위원에 한국 가족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한 사회복지계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4월20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과 부회장 참여.

3.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의 학문적 대응

1) 학술연구팀 구성

- 센터 모형개발팀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모형개발과 비교
- 교육훈련팀: 건강가정사
- 하위법제정 및 추진소위원회 (개정안 작업 포함)

2) 가족복지분야 교과과목개발의 필요성

3) 가족복지정책의 수립 및 건의: 가족수당제

4) 가족복지 실무진강화를 위한 워크샵 및 세미나: 가족복지전문가 양성 (이론과 지식, 기술연구)

4. 사회복지계 5개 단체 연합 실행위원회 – 발전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1) 2004년 2월 19일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보육업무 이관 에 관한 보고 및 결의대회”진행

2003년12월에 공대위의 활동을 이어받아 건가법 실행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며, 5개 단체(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공동주최로 보고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이 대회에서 전 국사회복지인들은 건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라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전담인력부분에 사회복지사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2) 5개 단체 실무위원회 재구성

3.29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신임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모시고 건강가족기
본법 발전추진 실무위원회로 개칭하고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하기로 함.

5. 전국 Net-Work 조직과 연대의 필요성 : 가족복지분야 협의체구성

- ▷ 사회복지계 원로+복지관 관장+학 계+법조계+여성계+실무협의체+시민연대
(예상안)

사회복지계원로	이윤구 (적십자사 총재), 박종삼 (월드비전 회장), 김정자 (전정무2차관)
복지관 관장	박상신, 구철수, 김현숙, 김인숙, 이종숙, 홍정혜(강남구가정복지센타장)
학 계	문선화, 허남순, 이영분, 한인영, 조홍식, 신선인, 한혜경 등
법 조 계	곽배희
여 성 계	여성연합, 민우회등
실무협의체	부관장, 부장등 실무자

6.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겸 워크숍 (2004. 5)

“주제: 건강가정기본법의 과제와 사회복지관의 위기(가제) ”

III.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현재 활동상황 경과보고

◆ 경과 보고

- 건강가정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진행과정

▣ 2003. 12 ~ 2004. 2.

2003. 12. 26.	사회복지계 공대위 건기법 실행위원회 구성
2004. 1. 15.	2.19 대회 준비 위원회 모임 (5개 단체 연합)
2004. 2. 12.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신임 임원진 복지부 방문 : 담당 국과장 상견례 및 면담
2004. 2. 19.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보육관계 업무이관에 관한 보고 · 결의대회 (국회의원회관)
2004. 2.20.-21.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의견서)을 위한 긴급 워크샵(양재동 교육문화회관)
2004. 2. 26.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계획 공모
2004. 2. 27.	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에 5개단체 단일안 의견서 기한내 제출

□ 2004. 3.

2004. 3. 11.	여성부장관 면담 및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정책 전문위원회 청원서 접수
2004. 3. 16.	사회복지관협회 시범사업 신청 복지관의 자문 및 수퍼비전
2004. 3. 19.	차홍봉 차기 사회복지학회장님과 담당 국과장 오찬
2004. 3. 20.	전국 4곳의 복지관 시범사업 신청안 복지부 접수(갈산, 청솔, 부송, 김해 복지관 접수됨)
2004. 3. 22.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들께 알립니다 (학회 현안 공지)
2004. 3. 23.	송재성 사회복지정책 실장 면담
2004. 3. 25.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통화
2004. 3. 26.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보건복지부 2004년 업무보고 (정부1청사)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장 사회복지계 대표로 참석
2004. 3. 29.	사회복지계 5개 단체 연합 건강가정기본법 발전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칭) : 조직 재 정비 및 인력 보강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 2004. 4월 경과보고 및 5월 추후 계획

2004. 4. 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과배희 소장 면담 : 법조계에서 사회복지계를 적극 지원해 주기 함.
2004. 4. 23.	한국사회복지학회 기획특집: 건가법의 문제와 방향(가제)
2004. 4. 27. ~ 28.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부산) : 센타설치와 사회복지관의 역할(가제)
2004. 5.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및 워크숍개최 예정

IV. 맺는말

A. 현실적 욕구

1. 다양한 가족형태(문제) -다양한 가족정책(소득정책등)
2.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3. 복지관 가족복지사업의 역할과 기능 목표의 재정립
4.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의 직무비교

B. 건강가정기본법 앞으로의 방향

1. 법의 개정안
2. 다학문적인 접근
 - 1) 상호존중과 이해노력
 - 2) 역할·기능·대상의 분화가능성
 - 3) 다양한 센터 모형의 출현가능성: 지역사회와의 융구반영

C. 경쟁력이 있는 가족사회복지 관계 이론·지식·기술개발 ⇔ 경험 (가족복지 사례관리)축적

1. 사회복지관의 주요3대 사업인 가족기능강화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 문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관의 당면 현안 ⇒ 주체적 적극적 참여가 필요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4월 이사회 ⇒ 개정안 논의와 센터 모형개발, 건강가정사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기금 조성
2.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복지학회의 문제요, 과제임 : 복지실천에 대한 공통 경험의 축적
3. 가족복지 협의체구성 : 전문화시대 다학문적 접근의 필요성
⇒ 법조계+여성계+가정계+심리상담+시민연대
4. 가족사회복지(학)분야의 전문성과 정체성 확립
⇒ 전문영역, 기술, 지식의 확장